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01 대상

>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

02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 기준

>

- ❶ 외국교육기관 허용 기준
 - 교육기관 소재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단,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함.

- ❷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❸ 기타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학력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03 외국교육기관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구분		고졸	대졸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내국인)	○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		
학력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함.

04 학력인정확인

❶ 학력인정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 외의 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❷ 직업학교, 기술학교 등의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제출만으로는 해당학교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교육부 또는 외교부 등)이나 대사관 등에서 학력인정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학력인정서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중 어느 학력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표기된 서류여야 함.

05 사례별 제출서류 예시(학력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1.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우)	예)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1. 초등학교·중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A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각 1통 B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3. AB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1. 한국 당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적(자퇴)증명서(또는 정원의 관리 증명서) 각 1통 2. 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3.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함.

06 Q&A

Q1.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번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경우)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Q3.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총 12년 미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Q2와 같이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외에서 총 12년 미만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국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 이수학년을 심의하여 부족한 이수기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Q4.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중국 소재 한국영사 확인 또는 중국 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부분 업무 대행기관인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교육처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학교인정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 중국에서 학력인정확인을 받을 경우

- 인증기관명 : 교육부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dgdgc.edu.cn>
- 주소 : 北京市海淀区王庄路1号同方科技广场B座18层 (우편번호 : 100083)
- 이메일 : cqv@cdgdgc.edu.cn • 전화 : +86-10-8237-9480

※ 한국에서 학력인정확인을 받을 경우

- 인증기관명 : 서울공자아카데미
- 홈페이지 : <http://www.cis.or.kr/main.htm> → 중국학력인증
- 전화 : +82-2-501-7300 • 이메일 : cis88@cis.or.kr

Q5.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의 학력인정확인서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학 학력에 한함). 또한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며,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서류로 발급받아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의 대체서류로 인정합니다. 단, 아포스티유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학력인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 : 홈페이지(www.fulbright.or.kr), 문의처(02-3275-4011, usec@fulbright.or.kr)

※ 아포스티유 문서의 발급은 당해국가로부터 가능하므로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해당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거나 서류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본 자료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